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1997. 7. 15
내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7년 7월 8일

. 회부일자 : 1997년 7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9회 임시회

. 제1차 내무위원회(1997. 7. 15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윤태무)

가. 제안이유

·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도의 실정에 맞도록 도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.

· 용어의 순화와 용어 정의를 정리 제정비함.

·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그 내용과 맞지않는 부분이나 불필요한 규제사항,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환경 변화등으로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o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전체위원회 중심에서 관계 전문분야 분과위원회(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) 중심으로 전환 운영하여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직적인 자문·심의 기능을 부여함.

o 문화재위원회 위원 정원을 전문분야별로 연구, 조사, 심의하기 위하여 15명이내에서 20명이내로 증원하며 전문위원 정원을 10명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함.

o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기능의 전승과 전수 교육 및 전수기능자의 양성과 보호·육성 규정을 신설함.

o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유·무형문화재 및 문화유적의 보호, 보존관리, 조사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단체를 육성·지원 규정을 신설함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건 영)

충청북도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o 조례명을 "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"를 "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"로 변경하고

o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도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증원하였으며

o 분과위원회를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연구, 조사, 심의하기 위하여 3개분과위원회를 두도록하여 실질적인 자문 및 심의기능을 부여 하였고 전문위원 정원도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

o 위원회와 각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

o 도지정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
o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지정된 문화재는 가지정후 3개월이내에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지정을 해제된 것으로 보던것을 6개월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였고

○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문화재 안내표시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유지 관리토록 하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호·육성 및 전수교육, 전수교육보조자, 전수장학생 선발에 대한 조문을 새로 신설하였으며

○ 문화재 보호·보존·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문화재보호단체에 대하여 지원·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

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생 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 략"

6. 심 사 결 과 : 원안대로 의결 (참석인원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 의견 요지 : "없 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(안)